

제267회 임시회
2008. 1. 28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1월 14일
-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4일

□ 제안이유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 및 『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』 등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폐교재산 대부료의 연간 감면 한도를 용도별로 변경(안 제34조제2항)

- (1) 사회복지시설 · 교육용시설 · 문화시설 · 공공체육시설 · 소득증대 시설로 폐교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연간 감액 한도를 70 퍼센트에서 사회복지시설 · 교육용시설 · 문화시설 ·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로,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30퍼센트로 변경함

나.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 규정 마련(안 제34조제3항 신설)

- (1)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비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
- 중앙행정기관 : 100분의 80
 - 기타 공공기관 : 100분의 50

다.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(안 제41조제4호)

- (1)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되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함
- (2) 분할매각 하는 경우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고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도록 함

라.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를 인상(안 제63조제1항)

- (1)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
- (2) 은닉재산 종류별 보상 한도를 필지별 100만원, 200만원에서 300만원, 600만원으로 인상함

□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『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』을 비롯한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 조례개정(안)을 수립·제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,

- 『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』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 - 폐교재산 대부분의 감액비율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1000분의 70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던 것을
 - 사회복지시설, 교육용시설, 문화시설, 공공체육시설은 1000분의 500, 영농조합법인 등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000분의 300의 한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감액대상 확대와 용도별 차등 감액의 기준을 정립하였고,
- 『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·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근거설정,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의 개정으로 잡종재산의 수의계약매각 대상요건의 일부 변경과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
-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개정 및 위임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
붙 임 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